

## 水產物 生產者物價指數 算定方式에 관한 考察 - 沿近海 漁獲物을 中心으로 -

李 光 珍\*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Lee, Kwang - Jin

### 目 次

|                      |          |
|----------------------|----------|
| I. 서 론               | IV. 결 론  |
| II. 물가지수의 개념과 편제방법   | 참고문헌     |
| III.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분석 | Abstract |

### I. 서 론

#### 1. 연구목적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가격에 의한 시장 자동조절 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물가는一國의 경제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복 후 인플레이션 진행과정에서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거나 변동폭이 큰 상황하에서는 건전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경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공동적으로 물가 안정에 부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물가의 중요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부가 매년 추곡수매가격을 예시하고 비생산기에 정부 보유미를 방출하는 것이라든지, 수산청이 설날이나 추석 명절 등 수산물 성수기에 오징어, 명태, 건멸치 등의 대중성 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물량을 조절하는 것 등은 물가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시책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물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물가정책을 정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물가지수의 산정이라 할 것이다.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조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비점과 보완 사항을 지적해 주신 최정윤 교수님, 정형찬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그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생산량 조절력이 미약하여 각 어종에 따라서는 수급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변동차가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현행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통계연보」,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수협통계조사월보」, 「수산년감」 등을 분석·참고할 때, 수산정책의 방향제시와 시책수립에는 물론 대어민 소득정책, 수산물 가격안정사업 등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산물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작성·공표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식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수산물가격과 물가지수

수산물에 대한 현행 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식에는 대상어종, 가격조사단계 및 지수산정 방법상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하여 수산정책의 입안과 수산물 유통 및 가격대책, 그리고 생산자들의 출하계획 추진 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산업전반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공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편제방식이 안고 있는 근본적 결함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작성·공표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작성에서는 먼저 생산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수산물 조사대상품목의 선정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번째는 수산품목의 가중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세번째는 수산물의 가격조사단계를 소비자 어시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조사대상품목의 가격이 실지 산지에서 생산자 판매가격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수산물 조사대상품목에서 생명태와 복어, 그리고 물오징어와 건오징어 등이 생산 단계와 가공품 단계를 구분치 않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가중치를 허용하여 생산자물가지수의 精度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가격의 상승이 일반물가의 상승을 선도했다고 말하며, 이것이 곧 수산물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주범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10년간의 생산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 보면, 1995년도의 총지수는 1986년보다 27.4퍼센트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산품은 20.4퍼센트포인트, 곡물류는 61.5퍼센트포인트, 축산물은 38.9퍼센트포인트 상승한 것에 비해 수산식품은 172.2퍼센트포인트로 총지수의 상승보다 6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원래 수산물은 계절생산물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물가변동이 일반 공산품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상과 같이 터무니없이 높게 상승·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에는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은행이 작성·공표하고 있는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에는 거품된 부분이 적용되어 있다는 문제시각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산정 자체에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수산물 물가지수 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산물의 경우에는 물가지수 산정상의 적절성 자체에 대한 연구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3.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전제로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품목의 선정과 품목별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물가지수 대표품목 선정기준에 따라 농림수산통계연보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물(양식물 포함, 이하에서 언급하는 연근해 어획물은 양식물을 포함한 것임)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생산량 및 생산자 판매가격을 조사하였다<sup>1)</sup>.

그리고,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한국은행 발행의 「물가총람」, 「경제통계연보」, 농림수산부 발행의 「농림수산통계연보」 등에서 발췌하였다. 한편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기존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연근해 어획물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현행 수산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의 보완과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정방식을 수정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현행 수산물의 생산자물가지수 조사대상품목에서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대표적인 수산물들의 취급내용을 살펴보고, 수산물의 품목별 가중치의 정확성과 수산물의 가격조사 대상지역의 적절성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현재 선진국의 물가지수 편제추세인 산업별 물가지수 체계로 접근하기 위한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정방식을 개편·보완하는 방안을 제시코자 노력하는 것이다.

## Ⅱ. 물가지수의 개념과 편제방법

### 1. 물가지수의 개념

오늘날 교환경재 하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가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sup>2)</sup>,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로 얻을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 단일가격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개의 상품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그 상품의 價格이라고 하고, 국민경제 내부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표시하고 있는 평균상품가치액 개념을 物價 혹은 物價水準이라고 한다<sup>3)</sup>. 따라서 우리는 개개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

1) 여기에서 원양어획물은 국내 반입량 수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1990, pp. 254~256.

과 모든 상품의 가격을 평균치로 나타낸 개념인 물가와는 구별하여야 하며, 이러한 물가에 대한 자료를 총칭하여 물가통계라 한다. 그러므로 가격은 상품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개념 즉, 개별상품의 가치인데 대하여 물가는 모든 상품을 생산자 거래가격 또는 소비자 거래가격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재화의 평균가격 개념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국내시장의 형태 여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종합적인 물가변동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수치로 나타내고자 고안한 것이 물가지수(price index)이므로<sup>4)</sup> 물가지수는 어느 시점의 가격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점의 가격을 백분비로 표시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물가의 종합적인 변동사항을 측정하는 척도로 이용된다. 따라서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알기 쉬운 수치로 나타내게 해주는 것이다. 마치 더위나 추위의 정도를 온도계로 재는 것과 같이 물가지수는 재화의 총체적인 거래가치인 물가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재는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거나 물가수준이 낮다는 등 개념은 갖고 있으나 실지로 그것이 얼마나 높고 낮은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 없다. 물가지수는 바로 이와 같은 물가수준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으로서, 포괄적인 범위에 걸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물가변동의 경향이나 경제성장률의 변동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2. 물가지수의 산정기준

### 1) 물가지수의 산식

총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수산식이 필요하며,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한 지수산식을 택하여 지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수산식들은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는 서로가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지금부터 그의 산식 하나하나에 대하여 관찰해 보기로 한다.

#### (1) 단순평균법(simple average method)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단순평균방법으로 단순산술평균법, 단순기하평균법, 단순조화평균법이 있다. 이 방법은 지수의 대상품목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가 현저히 다른데도 전 품목의 비중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쓰이지를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에 최초로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시에 단순산술평균법을 사용한 바가 있으며, 1936년에는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시에 단순기하평균법을 사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47년 기준 지수부터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3) 김경중, 「한국의 경제지표」, 매일경제신문사, 1993, pp. 499~501.

4) 김대식·노영기·안국신 공저, 「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1993, pp. 527~529.

5) 김경중, 前揭書, pp. 75~77.

가중평균법이 적용되었다.

(2) 가중평균법(weighted average method)

가중평균법으로는 가중산술평균법, 가중기하평균법, 가중조화평균법 등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계산이 간편한 가중산술평균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중산술평균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라스파이레스 산식(Laspeyres formula)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라스파이레스(E. Laspeyres)가 만든 지수산식으로서 이 산식을 기준시 고정가중산술평균법이라고도 말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수산식이다.

이 산식의 특징은 첫째, 기준시의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고 둘째, 지수계산을 위해 계속 수집할 자료는 물가(수량)지수의 경우 비교시의 가격(수량)자료 뿐이므로 지수작성이 간편하고 속보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는 것과, 셋째는 기준시의 가중치가 개편시까지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상대가격 체계의 변동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시에서 멀어질수록 精度가 낮아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지수산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식에서  $q_o$ 와  $p_o$ 는 0기준시점의 수량과 가격,  $q_t$ 와  $p_t$ 는 t비교시점의 수량과 가격을 의미한다.

$$\text{물가지수 } P_{ot}(q_o) = \frac{\sum p_t q_o}{\sum p_o q_o} \times 100 \quad (1)$$

$$\text{물가지수 } Q_{ot}(p_o) = \frac{\sum p_o q_t}{\sum p_o q_o} \times 100 \quad (2)$$

여기서  $\Sigma$ 은  $\sum_{i=1}^n$ 을 의미하며, p와 q에서 첨자 i를 모두 생략했다.

(1)식과 (2)식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라스파이레스 수정산식인 기준시 가중산술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P_{ot}(q_o) = \frac{\sum \frac{p_t}{p_o} w_o}{\sum w_o} \times 100 \quad (3)$$

$$Q_{ot}(p_o) = \frac{\sum \frac{q_t}{q_o} w_o}{\sum w_o} \times 100 \quad (4)$$

여기서  $w_o = p_o q_o$

이는 기준시점에서 가중치  $w_o$ 를 결정하고<sup>6</sup>, 두 시점간의 상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필요한 지수를 각각 구하면 된다.

6) 가중치(weights)란 중요도(또는 비중)를 매기는 숫자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모든 가중치를 합치면 1이 되는 속성을 가진다.

### ② 파세 산식(Paasche formula)

19세기 독일 경제학자인 파세(Paasche)에 의해서 개발된 산식으로서 라스파이레스 산식이 기준시 고정가중치를 적용하는 반면에 파세 산식은 비교시 패턴에 의한 각각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파세 산식에서는 비교시의 가격자료 뿐만 아니라 물량자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실무에서의 사용이 번잡하여 채택범위가 좁다. 그러나 라스파이레스 산식으로 작성된 지수를 검정하는 파세 검정(Paasche check)<sup>7)</sup>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text{물가지수 } P_{ot}(q_t) = \frac{\sum p_t q_t}{\sum p_o q_t} \times 100 \quad (5)$$

$$\text{물가지수 } Q_{ot}(p_t) = \frac{\sum p_t q_t}{\sum p_t q_o} \times 100 \quad (6)$$

여기서  $q_o$ 와  $p_o$ 는 0기준시점의 수량과 가격,  $q_t$ 와  $p_t$ 는 t비교시점의 수량과 가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식은 앞의 식에서 각각 기준시 수량  $q_o$ 를  $q_t$ 로, 기준시 물가  $p_o$ 를  $p_t$ 로 대체하여 각각 구할 수 있으므로 파생산식(derived formula)이라고도 한다.

### ③ 피셔의 이상산식(Fisher's ideal formula)

지수의 산식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각각偏差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편의를 보다 작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피셔의 이상산식이다. 피셔(I. Fisher)는 라스파이레스 산식과 파세 산식을 기하평균한 다음과 같은 지수산식을 제시하였다.

$$\text{물가지수 } PI_{ot} = \sqrt{P_{ot}(q_o) \cdot P_{ot}(q_t)} \quad (7)$$

$$\text{수량지수 } QI_{ot} = \sqrt{Q_{ot}(q_o) \cdot Q_{ot}(q_t)} \quad (8)$$

여기서,  $P_{ot}(q_o)$  :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P_{ot}(q_t)$  : 파세 물가지수

$Q_{ot}(q_o)$  :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

$Q_{ot}(q_t)$  : 파세 수량지수

이들 산식들은 지수들이 만족해야 하는 테스트(Test)<sup>8)</sup>인 순환테스트(circular test)<sup>9)</sup>, 시점역전 테스트(time reversal test)<sup>10)</sup> 요소역전 테스트(factor reversal test)<sup>11)</sup> 등 모든 테스트를 만족시키는 산식으로서 가장 이상적이라 하여 이를 피셔의 이상적인 지수산식이라 한다.

7) 파세검정(%) =  $\frac{\text{라스파이레스지수} - \text{파세지수}}{\text{라스파이레스지수}} \times 100$

8) Fisher, I., "The Making of Index Numbers", Boston, 1967. 및 통계청, 「통계학개론」, 통계 88-04, 1988, pp. 22~40 참조, 재인용.

9) 시점별 연쇄지수의 상승적이 1.0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0) 종합지수에 있어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역전시켜 구한 지수의 곱이 1.0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11) 본래의 지수산식과 요소를 역전한 지수산식과의 상승적이 가치지수가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2) 물가지수 작성시 고려사항

### (1) 기준시점의 결정

지수는 어느 일정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100으로 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수치이므로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시점을 선정하여야 한다<sup>12)</sup>. 이러한 기준시점을 결정하려면 첫째, 경제패턴이 정상적인 때를 선정하여야 한다. 즉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거래구조, 소비자물 가지수에서는 소비지출구조, 산업생산지수에서는 산업구조가 정상적인 때이어야 한다.

둘째, 각종 타 경제지수와의 비교 및 국제비교를 용이하도록 여러 경제지수의 기준시를 일치시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지수는 가중치를 기준시에 고정하여 작성하므로 각 품목의 가격이나 산업 구조가 매년 변화하면 현실의 산업구조와 괴리가 생기게 되므로, 고정가중치에 의한 지수는 경제활동의 실태를 잘못 나타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시 당시에는 전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던 품목이 그후 크게 성장한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한 지수를 계산하지 않으면 최근의 경제동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시점선택은 적절해야 하며, 또 기준시를 개정할 필요가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수 모두 일률적으로 5년마다 기준시를 개정하며, 끝자리가 0 또는 5인 해(年)를 기준시로 하고 있다<sup>13)</sup>. 기준시를 개정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년도가 100으로 표시됨과 더불어 신기준년도의 산업 구조에 대응하는 가중치로 갱신되고 채택품목도 최근 활동을 보다 잘 반영하는 품목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수개편이라고 한다.

### (2) 가중치 모집단

지수작성에 있어서 기준시점의 가중치 모집단과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가중치 산정기준은 금액자료이므로 모집단도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에서는 국내 총거래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서는 가계지출 소비총액을, 그리고 산업생산지수에서는 해당산업의 총생산액이 가중치 모집단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지수 작성시 품목수는 선정시에 거래량(가중치) 모집단 총액의 1/10,000 이상의 크기를 가진 품목)<sup>14)</sup>, 가격변동의 대표성 여부, 품질 및 규격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를 위한 통계조사시에는 지수의 정확도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목의 중요성, 대표성 및 자료수집의 신속성과 그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하여 품목을 각각 결정하고 있다<sup>15)</sup>.

12) 김경중, 前揭書, pp. 81~84 및 편인범, 前揭書, pp. 544~545.

13) 1985년 기준지수에서 1990년 기준지수로의 개편 : 물가지수의 노후도를 검증하는 파세검정(Paasche check<sup>1</sup>) 을 실시한 결과 생산자물가 총지수에 대한 라스파이레스지수와 파세지수간의 괴리율이 괴리허용 한계인 ±5% 를 상회하는 +5.2%로 나타나 가중치구조의 노후화 진행을 보여주는 한편 기준년도 개편의 필요성이 입증됨.

파세검정(%) =  $\frac{\text{라스파이레스지수} - \text{파세지수}}{\text{라스파이레스지수}} \times 100$

14) 한국은행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시에 가중치 모집단 총액의 1/10,000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현행 우리나라의 산업규모를 볼 때, 가장 적절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15) 김경중, 前揭書, pp. 82~83. 및 한국은행, 前揭書, p. 38.

## (3) 가중치 산정

가중치 산정은 지수산출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지수품목, 대상지역의 비중 등 전반적인 지수의 틀(frame)이 결정되며, 가격조사의 방향까지 제시된다. 이러한 지수산출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결정과정을 가중치 모집단의 결정과정부터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발생한다<sup>16)</sup>.

- ①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품목을 분류한다.
- ② 수집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가중치 모집단을 결정한다.
- ③ 가중치 모집단이 확정되면 절사점을 결정한다.
- ④ 절사기준이 결정되면 전 품목에 대한 구성비를 계산한다.
- ⑤ 절사기준 이하로 지수계산에서 제외된 품목이 차지하는 고유가중치(earned weight)를 채택 품목에 귀속시킨다.
- ⑥ 제외품목의 고유가중치 귀속작업이 끝나면 분류별, 품목별로 계산 중 발생한 단수의 정리 오차(rounding error)를 조정하여 가중치를 정리하여 지수를 試算하게 된다.

## 3. 물가지수의 유형

## 1) 생산자물가지수

## (1) 작성방법

현재 서울을 비롯한 16개 주요 도시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896개 품목에 대해 생산지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편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는, 1910년 지수편제와 함께 舊한국은행(朝鮮銀行)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1951년 7월부터 현 한국은행에서 계승하여 물가조사 및 지수편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최초 지수편제 산식은 1910년 당시 단순산술평균법을 사용하였으나 1947년에 기준시 가중산술평균법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조사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실시 하였으며, 이후 1992년 1월에 기준년도를 1990년으로 개편함으로써 이제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열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거래 단계 곧 도매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일반목적지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도매(都賣)』라는 용어는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산자 단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통속적인 도매상(wholesaler) 또는 대리점(distributor)에서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수편제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 商去來價格, 즉 국내 생산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생산자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입상품의 경우는 수입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편제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지수의 이와 같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라고 하고 있다<sup>17)</sup>.

16) 박찬문, 「경제지표와 경제분석」, 일신사, 1981, pp. 158~160.

17) 김경중, 前揭書, pp. 503~504.

기존의 도매물가지수를 생산자물가지수로 그 명칭을 바꾸어 사용한 것은 1990년 기준부터이며, 이때부터 896개의 조사대상 품목 중 농림수산품(64개)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을 생산자 판매 가격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격조사 단계에 부합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성격이 명확하게 되었다.

#### (2) 이용상의 유의점

이상과 같이 작성된 생산자물가지수는 매월 초에 신문 및 TV, 「월간 물가동향」 등을 통하여 공표되고 있는데, 이 자료의 이용상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수는 가격의 변동추이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의 절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이 지수에는 소매물가, 증권, 서비스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이 지수의 수준과 소비자물가지수, 농가판매 가격지수의 수준을 상호비교함으로써 기준시점으로부터의 상대적인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생산자물가지수와 농가판매 가격지수간 또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간의 마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는 없다.

넷째, 이 지수에는 운임 등 구입비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수요자로서의 기업이 지불한 가격을 지수화한 것은 아니다.

#### 2) 소비자물가지수

##### (1) 작성방법

소비자물가지수의 편제방식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32개 주요 도시를 대상지역으로 470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 가격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최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36년 경성상공회의소가 소매가격을 조사하고 이것을 지수화한 것이 시초다. 이것을 1945년부터는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1947년도 기준으로 한 가중총화지수로 이를 개편하여 공식계열로 발표하였는데, 1955년부터는 여기에 서비스요금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부터 이 업무는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1966년 12월에 1965년도를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그후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듭하여 1992년 5월에 1990년 기준으로 개편,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표되고 있는 전 도시 및 주요 도시별 소비자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에는 재화나 용역의 소매가격 및 서비스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최종단계의 물품가격을 의미한다. 이것을 개념상 소비자가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의 가격조사 대상품목은 품목별 지출이 농어촌을 제외한 전 도시가계 총 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인 품목으로서 동종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고, 품질의 동질성이 지속되어 가격계열의 비교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를 비목별로 분류하여 전 도시 소

18) 김경중, 前揭書, pp. 505~507.

비자물가지수와 주요 도시별 소비자물가지수를 편제한다<sup>18)</sup>.

또한 품목별 가중치 결정방법과 산식은 생산자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복식가중치 구조를 채택하고 전통적인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수정한 기준시 가중산술평균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지수는 『소비자물가동향』, 『한국통계월보』, 『물가연보』 등에 게재·공표하여 활용되고 있다.

#### (2) 이용상의 유의점

첫째로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의 물가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農家 및 漁家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가구나 특정소득 계층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가구의 물가지수라는 점이며, 셋째, 가계소비생활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의 변동 중 가격변동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Ⅲ.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분석

#### 1. 조사대상품목 선정의 한계

지수를 작성하려면 기준시점을 결정한 후, 이 기준시에 있어서 가중치 모집단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가중치 산정기준은 금액자료이므로 모집단도 금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국내 총거래액,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가계지출 소비총액, 산업생산지수에서는 해당산업의 총생산액이 가중치 모집단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품목수는 선정시에 거래량(가중치 모집단 총액의 1/10,000 이상의 크기를 가진 품목), 가격변동의 대표성 여부, 품질 및 규격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를 위한 통계조사시에는 지수의 정확도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목의 중요성, 대표성 및 자료수집의 신속성과 그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하여 품목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각 기준년도의 품목별 국내 거래액이 모집단 거래총액 1970년 1조 7,862억 원, 1975년 8조 2,165억 원, 1980년 33조 6,441억 원, 1985년 68조 2,389억 원, 1990년 153조 원의 1/10,000 이상의 거래비중을 갖고 동종산업내 상품군이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품질규격이 가급적 균일하게 유지되면서 가격시계열의 비교가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sup>19)</sup>. 이러한 대표품목의 선정기준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대상품목과 실제 재조사하여 검토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 <표 Ⅲ-1>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1970년 기준지수에서 한국은행의 조사대상품목을 살펴보면, 수산물의 조사대상품목수는 어류 3개 품목, 해조류 3개 품목 등 총 6개 품목을 조사대상품목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의 재분류는 실증조사를 통하여 물가지수 대표품목의 선정기준에 따라 기준년도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물 중에서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 의하면 1970년 기준지수의 수산품목은 어

19) 한국은행, 『물가총람』, 1976(p. 61), 1981(p. 48), 1986(p. 25), 1993(p. 39).

水產物 生産者物價指數算定方式의 考察

<표 III-1> 조사대상 품목의 비교

| 한국은행<br>제 분류 | 한국은행<br>제 분류 | 1970=100   | 1975=100     | 1980=100   | 1985=100      | 1990=100      | 제 분류          |              |
|--------------|--------------|------------|--------------|------------|---------------|---------------|---------------|--------------|
|              |              |            |              |            |               |               | 한국은행<br>제 분류  | 한국은행<br>제 분류 |
| 수산식용품(6)     | 수산식품(22)     | 수산식품(10)   | 수산식품(23)     | 수산식품(13)   | 수산식품(15)      | 수산식품(15)      | 수산식품(23)      | 수산식품(15)     |
| 1) 어 류(3)    | 1) 어 류(15)   | 1) 어 류(5)  | 1) 선 어 개류(7) | 1) 어 류(16) | 1) 선 어 개류(11) | 1) 선 어 개류(11) | 1) 선 어 개류(11) | 1) 어 류(16)   |
| ① 가자미류       | ① 병 태*       | ① 가자미류     | ① 병 태*       | ① 가자미류     | ① 병 태         | ① 가자미류        | ① 가자미류        | ① 가자미류       |
| ② 북 어        | ② 물오징어*      | ② 물오징어*    | ② 물오징어*      | ② 물오징어*    | ② 물오징어*       | ② 물오징어*       | ② 물오징어*       | ② 물오징어*      |
| ③ 멸 치        | ③ 조 기        | ③ 조 기      | ③ 조 기        | ③ 조 기      | ③ 조 기         | ③ 조 기         | ③ 조 기         | ③ 조 기        |
| 2) 해 조 류(3)  | ④ 고 등 어      | ④ 고 등 어    | ④ 고 등 어      | ⑤ 강 달 이    | ⑤ 강 달 이       | ⑥ 갈 팔 달 어     | ⑥ 갈 팔 달 어     | ⑦ 강 달 어      |
| ① 미          | ⑤ 갈 치        | ⑤ 갈 치      | ⑤ 갈 치        | ⑥ 고 등 어    | ⑥ 고 등 어       | ⑦ 고 등 어       | ⑦ 고 등 어       | ⑧ 고 등 어      |
| ③ 한          | ⑥ 강 달 이      | ⑥ 강 달 이    | ⑥ 강 달 이      | ⑦ 갈 팔 달 어  | ⑦ 갈 팔 달 어     | ⑧ 갈 팔 달 어     | ⑨ 가 자 미       | ⑩ 가 자 미      |
|              | ② 미          | ⑦ 전 멸 치    | ⑦ 전 멸 치      | ⑧ 전 멸 치    | ⑨ 멸 치 류       | ⑩ 멸 치 류       | ⑪ 삼 치 류       | ⑫ 삼 치 류      |
|              | ③ 한          | ⑧ 전 멸 치    | ⑧ 전 멸 치      | ⑨ 전 멸 치    | ⑩ 고등어류        | ⑪ 고등어류        | ⑫ 고등어류        | ⑬ 가 오 리류     |
|              |              | ⑨ 해 조 류(2) | ⑨ 해 조 류(2)   | ⑩ 해 조 류(2) | ⑪ 산 치 류       | ⑫ 산 치 류       | ⑬ 산 치 류       | ⑭ 가 오 리류     |
|              |              | ② 미        | ③ 해 조 류      | ③ 해 조 류    | ⑫ 산 치 류       | ⑬ 산 치 류       | ⑭ 산 치 류       | ⑮ 산 치 류      |
|              |              |            |              | ③ 해 조 류    | ⑭ 고등어류        | ⑮ 고등어류        | ⑯ 전 멸 치       | ⑯ 전 멸 치      |
|              |              |            |              | ② 미        | ⑪ 산 치 류       | ⑫ 산 치 류       | ⑬ 오 청 어       | ⑬ 오 청 어      |
|              |              |            |              |            | ② 미           | ⑬ 오 청 어       | ⑭ 산 오징어*      | ⑭ 산 오징어*     |
|              |              |            |              |            | ③ 해 조 류(2)    | ③ 해 조 류(2)    | ⑤ 문 어         | ⑤ 문 어        |
|              |              |            |              |            | ② 미           | ④ 해 조 류(2)    | ⑥ 꽂 류(2)      | ⑥ 꽂 류(2)     |
|              |              |            |              |            |               | ② 미           | ⑦ 조 조 개       | ⑦ 조 조 개      |
|              |              |            |              |            |               |               | ① 미 김         | ① 미 김        |
|              |              |            |              |            |               |               | ② 미 김         | ② 미 김        |
|              |              |            |              |            |               |               | ② 미 김         | ② 미 김        |
|              |              |            |              |            |               |               | ④ 해 조 류(2)    | ④ 해 조 류(2)   |
|              |              |            |              |            |               |               | ① 미 김         | ① 미 김        |
|              |              |            |              |            |               |               | ② 미 김         | ② 미 김        |
|              |              |            |              |            |               |               | ③ 해 조 개       | ③ 해 조 개      |
|              |              |            |              |            |               |               | ② 미 김         | ② 미 김        |
|              |              |            |              |            |               |               | ③ 해 조 개       | ③ 해 조 개      |
|              |              |            |              |            |               |               | ② 미 김         | ② 미 김        |
|              |              |            |              |            |               |               | ④ 해 조 개       | ④ 해 조 개      |
|              |              |            |              |            |               |               | ① 미 김         | ① 미 김        |
|              |              |            |              |            |               |               | ② 미 김         | ② 미 김        |

주: ① \*는 생산 및 가공에 시 이중으로 침계되어 가중치를 과중하게 만드는 품목

② 제분류는 본 연구자가 농업수산통계연보로부터 수산물을 베기자로 분류함.

자료: 한국은행『물가총(각년도)』, 농업수산부『농림수산통계연보(각년도)』에서 작성

류 15개 품목, 갑각류 2개 품목, 패류 3개 품목, 해조류 2개 품목 등 모두 22개 품목으로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에 고려된 6개 품목과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이 너무 많음을 볼 수 있다.

② 1975년 기준지수의 한국은행 조사대상품목수는 선어류 5개 품목, 건어류 3개 품목, 그리고 해조류 2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으로 1970년보다 4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추가된 품목은 명태, 물오징어, 조기, 고등어, 갈치 등 5개 품목인 반면에 한천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멸치는 그 명칭을 전멸치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조사대상 지역을 산지 어시장이 아닌 소비지 어시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태와 북어, 그리고 물오징어와 건오징어 등 생산 및 가공에서 이중으로 집계되어 가중치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본 연구의 1975년 기준지수의 수산품목수는 1970년 기준과 비교해 볼 때, 패류에서 1개 품목이 증가한 총 23개 품목이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추가된 품목은 갑오징어, 문어, 피조개 등이며, 탈락된 품목은 명태, 송어류 등 2개 품목이다.

③ 1980년 기준지수에서 한국은행의 조사대상품목수는 선어개류 7개 품목, 염전어류 4개 품목, 해조류 2개 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으로 종전보다 3개 품목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서 굴, 가자미, 전어포 등 3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탈락된 품목은 없다. 또한 여기에서도 생명태와 북어, 그리고 물오징어와 건오징어 등 생산 및 가공에서 이중으로 집계되어 가중치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1980년 기준지수에서 채택된 수산품목은 어류 16개 품목, 갑각류 2개 품목, 패류 3개 품목, 해조류 2개 품목 등 1975년 기준과 동일한 총 23개 품목이다. 여기에서 추가된 품목은 명태이며, 탈락된 품목은 피조개로 나타났다.

④ 1985년 기준지수의 한국은행 조사대상품목수는 선어개류 11개 품목, 염전어류 2개 품목, 해조류 2개 품목 등 모두 15개 품목으로 종전보다 2개 품목이 늘어났다. 추가된 품목은 가오리, 조개, 삼치, 게 등 4개 품목이며, 탈락된 품목은 건어포, 북어 등 2개 품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물오징어와 건오징어가 생산 및 가공에서 이중으로 집계되어 가중치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1985년 기준지수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품목수는 어류 15개 품목, 갑각류 2개 품목, 패류 4개 품목, 해조류 2개 품목 등 1980년 기준과 동일한 총 23개 품목이다. 여기에서 송어류, 피조개 등이 추가되었으며, 병어, 복어류 등이 탈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마지막으로 1990년 기준지수의 한국은행 조사대상품목수는 선어개류 11개 품목, 염전어류 2개 품목, 해조류 2개 품목 등 조사대상품목수는 종전과 같으나, 추가된 품목은 낙지이며, 탈락된 품목은 삼치이다. 여기에서도 물오징어와 건오징어가 생산 및 가공에서 이중으로 집계되어 가중치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1990년 기준지수의 수산품목은 어류 16개 품목, 갑각류 2개 품목, 패류 4개 품목, 해조류 2개 품목 등 1985년 기준보다 1개 품목이 늘어난 총 24개 품목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된 품목은 병어, 불락, 복어류, 키조개 등이며, 탈락된 품목은 명태, 강달이, 소라고 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한국은행의 조사대상품목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품목이 그 구성내용 뿐만 아니라 품

목수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수산품목의 선정시에 있어 거래량, 가격변동의 대표성 여부, 품질 및 규격의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품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행에서 제외된 수산품목이 많았으므로 현행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시 고려되는 수산품목으로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표품목이라고 볼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다.

## 2. 품목별 가중치의 비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수산물의 품목별 가중치가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도 문제가 된다. 품목별 가중치는 조사대상품목의 실거래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데, 본 연구에서 실증조사결과 부여한 가중치는 한국은행의 가중치와 비교하기 위한 값이므로 상대적인 값이다.

여기에서도 가중치는 어떤 특정품목에 대하여 실증조사 결과의 가중치와 한국은행의 가중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가중치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의 조사품목의 가중치에 대한 문제점을 <표 III-2>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70년에 있어 수산물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한천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가중치 비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산품의 가중치가 4.7로 총생산자물가지수의 가중치 1000.0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1975년의 가중치는 조기, 김, 멸치, 미역 등은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반면 고등어, 명태는 한국은행에서 그 비중이 높게 평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명태의 경우는 한국은행의 가중치에서 원양어획물을 포함하나, 실증조사 결과의 가중치에서는 원양어획물이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원양어획물의 국내 반입량 수치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1980년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조기, 갈치, 김, 미역 등을 실증조사 결과의 가중치보다 그 비중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굴, 고등어, 가자미 등은 실증조사에서보다 한국은행에서 그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명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가중치 산정에서는 원양어획물을 포함하나, 실증조사 결과에서는 원양어획물이 제외된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1985년의 가중치는 갈치, 가오리, 가자미, 굴, 게, 멸치, 김 등은 실증조사 결과의 가중치보다 한국은행에서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 반면에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은 실증조사의 가중치보다 한국은행에서 그 비중이 높게 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조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특정품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패류 몇 품목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조개 한 품목보다도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1990년의 가중치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갈치, 낙지, 굴, 멸치, 김, 미역 등은 실증조사의 가중치보다 한국은행에서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되어 있으나, 조기, 가자미, 오징어, 게 등은 한국은행에서 그

&lt;표 III-2&gt; 품목별 가중치의 비교

| 한국은행         | 1970=100      |              | 1975=100      |              | 1980=100      |              | 1985=100      |               | 1990=100      |               |
|--------------|---------------|--------------|---------------|--------------|---------------|--------------|---------------|---------------|---------------|---------------|
|              | 실 측 치         | 한국은행          | 실 측 치         | 한국은행          |
| ○ 전오청어 (0.6) | ○ 오청어류(0.63)  | ○ 명 태 (3.2)  | ○ 명 태(0.11)   | ○ 명 태 (2.5)  | ○ 명 태(0.39)   | ○ 명 태 (1.8)  | ○ 명 태(0.36)   | ○ 물오청어 (2.3)  | ○ 오청 어(1.83)  |               |
| ○ 북 어 (0.5)  | ○ 명 태(0.58)   | ○ 북 어 (0.4)  |               | ○ 북 어 (0.3)  | ○ 물오청어 (3.27) | ○ 물오청어 (2.2) | ○ 오청 어(2.54)  | ○ 물오청어 (1.6)  | ○ 오청 어 (1.54) | ○ 물오청어 (0.6)  |
| ○ 멸 치 (0.2)  | ○ 멸 치 류(0.17) | ○ 물오청어 (3.0) | ○ 오청 어(3.27)  | ○ 전오청어 (0.8) | ○ 전오청어 (0.8)  | ○ 전오청어 (1.7) | ○ 조 기(2.50)   | ○ 조 기(2.54)   | ○ 조 기(1.4)    | ○ 전오청어 (0.6)  |
| ○ 김 (2.3)    | ○ 김 (2.41)    | ○ 전오청어 (2.9) |               | ○ 조 기 (2.3)  | ○ 참조기(2.50)   | ○ 참조기(2.54)  | ○ 조 기 (1.7)   | ○ 참조기(2.54)   | ○ 참조기(1.82)   | ○ 조 기 (1.1)   |
| ○ 미 역 (0.9)  | ○ 미 역(0.84)   | ○ 조 기 (2.1)  |               | ○ 고등어 (2.2)  | ○ 고등어류(1.95)  | ○ 고등어 (1.4)  | ○ 고등어 (2.05)  | ○ 고등어 (1.2)   | ○ 고등어 (0.42)  | ○ 고등어 (1.0)   |
| ○ 한 천 (0.2)  | ○ 한 천(0.07)   | ○ 고등어 (2.2)  | ○ 고등어류(1.95)  | ○ 갈 치 (3.56) | ○ 고등어 (1.1)   | ○ 고등어류(0.93) | ○ 가 오 리 (0.5) | ○ 가 오 리(0.67) | ○ 가자미류(0.67)  | ○ 가자미류(0.68)  |
| ○ 갈 치 (2.0)  | ○ 갈 치 (2.0)   | ○ 갈 치 (3.56) | ○ 고등어 (1.1)   | ○ 전멸치 (3.12) | ○ 전멸치 (0.7)   | ○ 가지미류(0.45) | ○ 가지미류(0.45)  | ○ 가지미류(0.59)  | ○ 가지미류(0.59)  | ○ 가지미류(0.60)  |
| ○ 김 (1.1)    | ○ 김 (1.1)     | ○ 전멸치 (1.9)  | ○ 전멸치 류(1.96) | ○ 전멸치 (1.9)  | ○ 전멸치 류(0.93) | ○ 전멸치 (0.8)  | ○ 전멸치 류(1.54) | ○ 전멸치 류(1.54) | ○ 전멸치 류(1.54) | ○ 전멸치 류(1.54) |
| ○ 미 역 (0.2)  | ○ 미 역(1.21)   | ○ 글 류(1.21)  | ○ 글 류(1.21)   | ○ 김 (1.4)    | ○ 김 (3.21)    | ○ 김 (3.21)   | ○ 계 계(0.48)   | ○ 계 계(0.48)   | ○ 계 계(0.48)   | ○ 계 계(0.48)   |
|              |               | ○ 미 역 (0.5)  | ○ 미 역(0.80)   | ○ 조 개 (0.4)  | ○ 조 개 (0.4)   | ○ 조 개 (0.4)  | ○ 피조개(0.67)   | ○ 조 개 (0.9)   | ○ 피조개(0.90)   | ○ 피조개(0.90)   |
|              |               |              |               | ○ 바지락 *      | ○ 바지락 *       | ○ 바지락 *      | ○ 바지락 *       | ○ 바지락 *       | ○ 바지락 *       | ○ 바지락 *       |
|              |               |              |               | ○ 굴 (0.6)    | ○ 굴 류(0.98)   | ○ 굴 류(0.98)  | ○ 굴 류(0.98)   | ○ 굴 류(0.98)   | ○ 굴 류(0.98)   | ○ 굴 류(0.98)   |
|              |               |              |               | ○ 김 (1.7)    | ○ 김 (2.80)    | ○ 김 (2.80)   | ○ 김 (2.80)    | ○ 김 (2.80)    | ○ 김 (2.80)    | ○ 김 (2.80)    |
|              |               |              |               | ○ 미 역 (0.6)  | ○ 미 역(0.48)   | ○ 미 역(0.48)  | ○ 미 역(0.48)   | ○ 미 역(0.48)   | ○ 미 역(0.48)   | ○ 미 역(0.48)   |

주 : \*는 한국은행에서 조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개를 비교대상으로 하 고 바지락을 제외시킴

자료 : 한국은행 「물가총합(각년도)」, 농협수산부 「농협수산통계 연보(각년도)」에서 작성

## 水產物 生產者物價指數 算定方式에 관한 考察

비중이 높게 평가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선정한 품목 중에서 조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이, 현행 한국은행의 품목별 가중치 산정이 조사대상품목의 생산자 판매단계에서의 실거래액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증조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3. 가격조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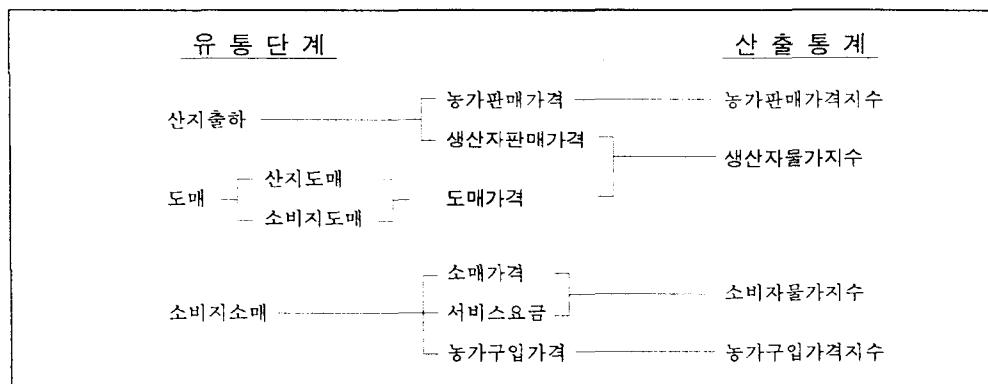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품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통단계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대체적으로 <표 Ⅲ-3>과 같이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크게 산지와 소비지로 나눌 수 있고, 산지는 다시 산지출하(1단계)와 산지도매(2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소비지는 소비지도매(3단계)와 소비지소매(4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20)</sup>. 이에 따라 산출되는 물가통계는 <그림 Ⅲ-1>에서와 같이 농가판매 가격지수와 농가구입 가격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가격조사단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Ⅲ-1>에서는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지수 산출이 어떤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지수의 이와 같은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로 사용하고 있다<sup>21)</sup>. 우리나라로 1990년 기준지수부터는 기존에 사용하던 도매물가지수를 생산자물가지수로 그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 농림수산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의 가격은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농수산물은 현

<표 Ⅲ-3> 유통단계

| 산<br>지    |           | 소<br>비<br>지 |
|-----------|-----------|-------------|
| 산지출하(1단계) | 산지도매(2단계) | 소비지도매(3단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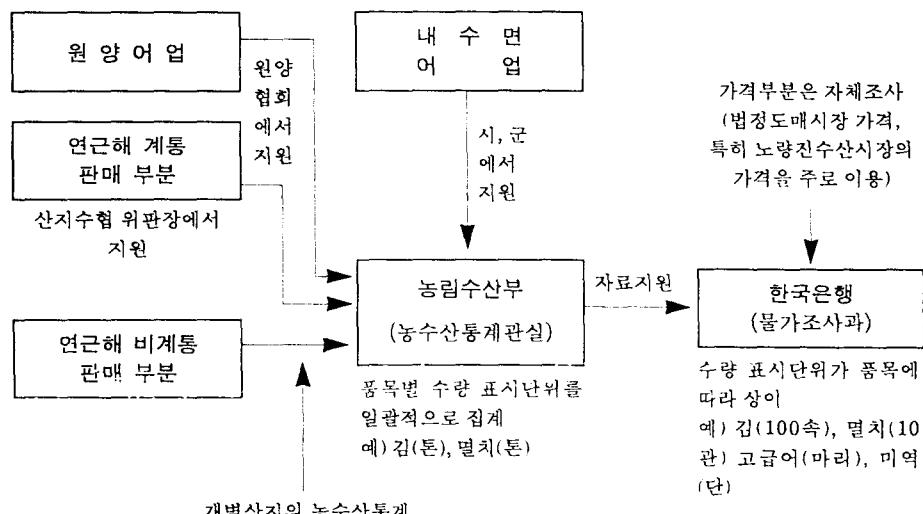


<그림 Ⅲ-1> 유통단계별 산출물가통계

20) 김경중, 前揭書, pp. 502~503.

재 생산자 판매가격을 소비지도매시장의 도매가격으로 조사·집계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산지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지도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1차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소비지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 판매가격으로서 조사·집계하여 이를 생산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는 산지도매시장, 즉 산지수협 위판장이 존재하고 있어 여기에서 형성된 가격이 1차 가격인 생산자 판매가격이므로,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소비지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조사·집계하는 한국은행의 통계수집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림수산통계연보(농림수산부)의 수산물 관련 통계처리체계는 <그림 III-2>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먼저 내수면어업의 통계는 각 시·군·읍·면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근해어업 중 계통출하 통계는 개별산지의 산지수협 위판장으로부터 수집하고 있으며, 비계통출하 통계는 농림수산부 산하 개별산지의 농수산통계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lt;그림 III-2&gt; 현행 수산물 관련 통계처리 체계도

21) 물가지수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상품유통과정상의 가격조사단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상품유통과정 및 가격조사 단계에 따른 물가지수 명칭

| (상품유통과정)   | 생산자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
| (가격조사단계)   | 생산자판매가격 | 도매상판매가격 | 소매상판매가격 | 소비자구입가격 |
| (물가지수명칭)   | 생산자물가지수 | 도매물가지수  | 소매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중간유통단계(도매, 소매)의 명확한 구분, 지수명칭과 가격조사 단계의 불일치, 생계비조사의 필요성 증대 등을 이유로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에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로, 도매물가지수(Wholesale Price Index)에서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로 지수편제방식과 명칭을 변경하여 왔으며, 실제로 미국은 1978년부터, 영국은 1983년부터, 프랑스는 1986년부터, 독일은 1949년부터 생산자물가지수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매물가지수의 경우 1957년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를 편제하면서 지수명칭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였다. |         |         |         |         |

그리고 원양어업은 원양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연말에 가서 1년 단위로 통합해서 통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수산물의 거래액을 추계하는 데만 이렇게 집계된 자료를 이용하고, 수산물 생산자 물가지수에 반영할 가격은 이와는 별도로 조사·집계하고 있다. 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가격은 소비자 법정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조사·집계하고 있는데, 특히 노량진수산시장의 가격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 실례로 농림수산부에서는 품목별 거래단위를 수량인 경우에 일괄적으로 톤단위로 표시하여 집계(예: 김 ××톤, 멸치 ××톤)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에서는 수량인 경우 거래단위가 품목별로 서로 다르게 표시(예: 김 ××속, 멸치 ××관, 미역 ××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생산자 판매단계의 산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는 수산물은 생산되어 각지에서 위판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으로 통계의 속보성이 떨어지는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해서 수산물 가격이 물가지수 산정에 있어 과대평가 된다면 물가에 대한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상 현행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상의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먼저 한국은행의 조사대상품목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품목을 비교해 보면, 그 구성내용과 조사대상품목수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수산물의 조사대상품목이 실제 수산물의 대표품목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현행 조사대상품목 선정기준인 품목별 국내 거래액이 모집단 거래총액의 1/10,000 이상의 거래비중을 가지는 품목은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할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24개 품목이지만 한국은행에서는 15개 품목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품목선정 기준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는 품목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수산품목의 가중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한국은행의 가중치와 본 연구에서의 수정된 가중치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품목은 한국은행의 가중치가 본 연구의 수정된 가중치보다 더 낮게 평가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품목은 반대로 더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 ③ 현재 한국은행의 수산품목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가격조사단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산물은 산지수협 위판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성된 1차 가격을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간주하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소비자도매시장의 가격을 조사·집계하고 있었다.
- ④ 그 외에 생명태와 북어, 그리고 물오징어와 건오징어 등이 생산 및 가공에서 이중으로 집계되어 가중치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 4.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구조

##### 1)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재산정 과정

###### (1) 모집단 거래액의 추계

모집단이 되는 수산물의 국내 거래액은 1970년~1990년의 연근해 어획물 중 제1차 유통과정, 즉 생산자 판매금액을 모집단으로 한다. 여기에서 거래액은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의 각 년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수산물의 거래액을 추계하는 데는 '농림수산통계연보(농림수산부)상의 어종별 계통 및 비계통 출하량과 수산물계통판매고 통계연보(수협중앙회)상의 계통판매가격 및 수산청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였다.

###### (2) 조사대상품목의 선정

이상적인 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을 조사대상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자료수집,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대표성 있는 품목을 선정,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수를 편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할 때, 이러한 조사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1990년 중 품목별 국내 거래액이 모집단 거래총액(153조원)의 1/10,000(153억원) 이상의 거래비중을 갖고 동종산업내 상품군의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품질규격이 가급적 균일하게 유지되면서 가격시계열의 비교가 가능한 품목으로 조사대상품목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 기준지수에 선정된 조사대상품목으로는 가자미류, 넘치류, 병어, 참조기, 갈치, 붕장어, 불락, 숭어류, 복어류, 멸치류, 고등어류, 삼치류, 가오리류, 오징어, 잡오징어, 문어, 젓새우, 꽃게, 굴류, 바지락, 피조개, 키조개, 미역, 김 등 총 24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 (3) 지수의 산식과 가중치 산정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식으로서는 종래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스파이레스 수정산식(Modified Laspeyres Formula)인 기준시 가중산술평균법을 본 연구의 지수산식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라스파이레스 수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P_{ot}(q_o) = \frac{\sum \frac{p_t}{p_o} w_o}{\sum w_o} \times 100 \quad (9)$$

여기서  $w_o = p_o q_o$

위의 식에서  $w_o$ 는 기준시점의 가중치,  $q_o$ 와  $p_o$ 는 0 기준시점의 수량과 가격, 그리고  $p_t$ 는 t비교시점의 가격을 의미한다.

###### (4) 기준시점의 결정

생산자물가지수는 조사대상품목과 가중치가 특정년도의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기준시 가중산술평

### 水產物 生產者物價指數 算定方式에 관한 考察

균법을 사용하여 편제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상품이 출현함으로써 생산구조가 달라지는 등 경제구조가 변하게 되면 현실반영도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마다 기준시점을 변경하여 조사대상품목과 가중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된다. UN 통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물가지수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개편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매 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하였다.

#### 2)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재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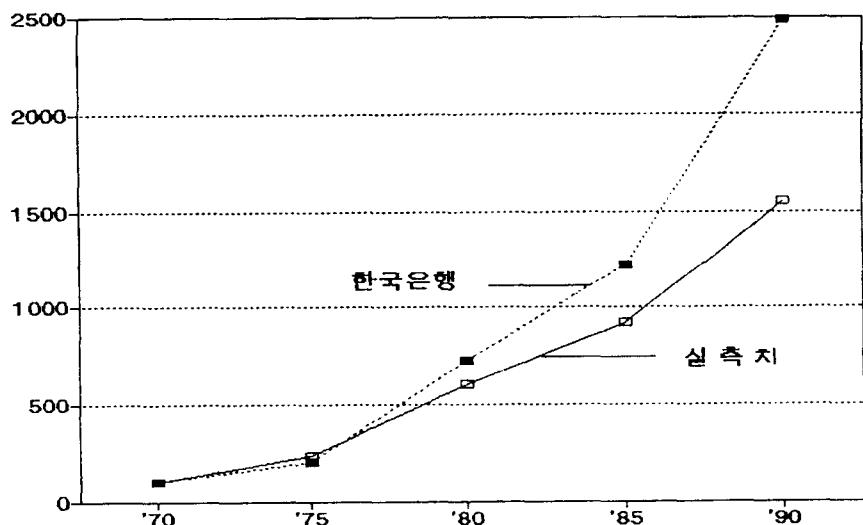
농림수산통계연보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물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와 이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여 활용중에 있는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를 서로 비교하면 <표 III - 4> 및 <그림 III - 3>과 같다.

<표 III - 4>에서는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와 실증조사 결과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970년이 100.00, 1975년이 201.49, 1980년이 721.39, 1985년이 1,221.39, 1990년이 2,487.56이며, 실증조사 결과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970년이 100.00, 1975년이 233.59, 1980년이 605.52, 1985년이 922.55, 1990년이 1,553.74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는 실증조사 결과보다 훨씬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

<표 III - 4>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비교

|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
| 한국은행 PPI | 100.00 | 201.49 | 721.39 | 1,221.39 | 2,487.56 |
| 수정된 PPI  | 100.00 | 233.59 | 605.52 | 922.55   | 1,553.7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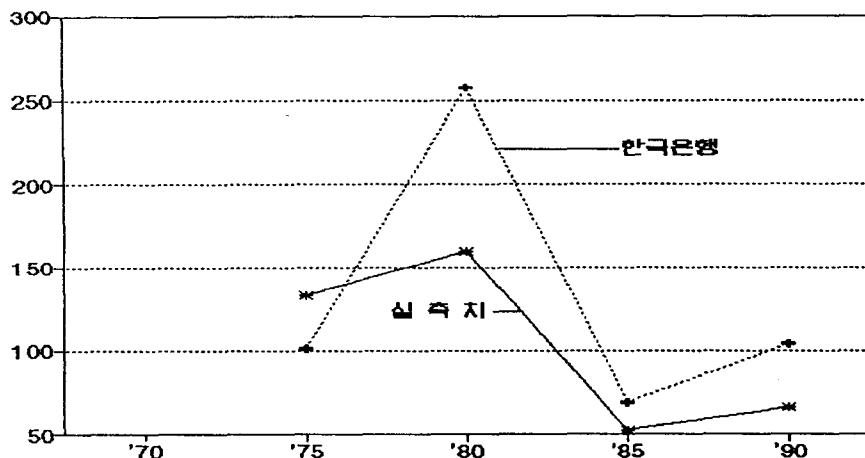
<그림 III - 3>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의 추이 비교

주 : 실측치는 <표 III - 4>의 수정된 PPI임

&lt;표 Ⅲ-5&gt; 수산물 생산자물가상승률 비교

(단위 : %)

|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
| 한국은행 PPI | -    | 101.49 | 258.03 | 69.31 | 103.67 |
| 수정된 PPI  | -    | 133.59 | 159.22 | 52.36 | 66.25  |



&lt;그림 Ⅲ-4&gt; 수산물 생산자물가의 상승률 추이 비교

주 : 실측치는 &lt;표 Ⅲ-5&gt;의 수정된 PPI임

타났다. 이는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현행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와 본 연구에서 얻어진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표 Ⅲ-5> 및 <그림 Ⅲ-4> 와 같다.

<표 Ⅲ-5>와 <그림 Ⅲ-4>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를 살펴보면, 1970년을 100으로 한 1975년도는 1970년도에 비해 101.49퍼센트 상승하였으며, 1980년도는 1975년도와 비교해 볼 때 무려 258.03퍼센트 상승하였다. 그리고 1985년도는 그 이전보다 69.31퍼센트 상승하였고, 1990년도는 1985년도에 비해 103.67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증조사 결과의 수산물 생산자물가를 살펴보면 1970년을 100으로 한 1975년도는 1970년도보다 133.59퍼센트 상승하였고, 1980년도는 1975년도에 비해 159.22퍼센트 상승하였다. 1985년도는 1980년도보다 52.36퍼센트 상승하였으며, 1990년도는 1985년도에 비해 66.2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이 본 연구의 실측치의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산품목에 대한 현행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식에서 대상어종, 가중치 산정, 가격조사단계 및 지수산정 방법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수산물의 정확한 가격변동 추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물가상승 동향을 측정하는 것도 상당한 오차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 IV. 결 론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단순히 수산물의 수급변화에 의한 생산자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만이 아니라, 수산물 수급 및 가격관리, 정부비축사업, 가격안정사업 등의 수산정책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정책자료로서의 역할도 한다. 특히 1997년도에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자유판매제도<sup>22)</su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지 어시장에서의 생산자 가격의 움직임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지수의 산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산업전반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공표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 편제방식이 대상어종, 가격조사단계 및 지수산정방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매우 많아 수산물 생산자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한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이미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산물의 조사대상품목은 현재 생산자물가지수의 선정기준인 각 기준년도의 거래량, 즉 가중치 모집단 총액의 1/10,000 이상의 크기를 갖고 동종산업내 상품군이 가격변동을 대표할 수 있으며, 가격시계열의 비교가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시에 고려되는 수산물의 조사대상품목이 본 연구에서 현행 조사대상품목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품목수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행의 품목수가 훨씬 적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시에 고려되는 수산품목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표품목이라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은행의 가중치와 본 연구에서의 수정된 가중치를 비교해 본 결과, 어떤 품목은 한국은행의 가중치가 수정된 가중치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품목은 반대로 더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현행 한국은행의 품별 가중치 산정이 조사대상품목의 생산자 판매단계인 산지수협 위판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 대량소비지 어시장의 1차 경락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별 가중치에 문제가 있음을 보았다.

셋째, 현재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을 위해 조사대상품목 중 대부분 품목의 가격을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농림수산품은 현재 생산자 판매가격을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산물의 경우는 산지 산지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지 도매시장의 1차 가격으로 생산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는 산지도매시장, 즉 산지수협 위판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경우와 같이 소비지 도매시장의 가격을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조사·집계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가격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산정한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와 현행 한국은행에

22) 연근해 어획물은 현행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인 수협위판장에서만 거래를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수협을 포함한 타 구매처에서도 어획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 수산물 유통제도이다.

서 발표하는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의 수정·보완된 생산자물가보다 현행 한국은행의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가 훨씬 높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II-4> 참조).

그러나, 이에 관한 기존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수행된 초기적 연구인 까닭에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정밀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양어획물의 국내 반입량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양어획물의 국내 반입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근해 어획물에 원양어획물의 국내 반입량을 포함한다면 보다 정확한 생산자물가지수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수산물의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 UR<sup>23)</sup>협상의 타결로 외국으로부터 수입개방 압력과 함께 수입자유화 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입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sup>24)</sup>.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 생산량만으로 전체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정된 국내 생산량만으로서는 최근의 증가되는 수산물 수요에 맞추어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수산물의 가격을 반영하므로써 보다 精度높은 생산자물가지수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경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82.
- , “물가조사와 물가지수”, 1971.
- 곽혜선,『경제기사 소프트』, 사계절, 1993.
- 김경중,『한국의 경제지표』, 매일경제신문사, 1993.
- 김규철, “물가안정의 과제와 정책방향”,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 1995. 4월호, pp. 18~22.
- 김기형, “물가변동의 요인분석”, 대우경제연구소, 월간경제, 1994. 10, pp. 11~16.
- 김대식·노영기·안국신,『현대 경제학원론』, 박영사, 1993.
- 김성호·김운근, “가격유지와 생산조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48, 1982. 12.
- 김우철 외 7인 편저,『현대통계학』, 영지문화사, 1993.
- 농림수산부,『농림수산통계연보』, 1970~1994.
- 대한상공회의소, “물가통계의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센터, 한국경제연구총서, 1978. 5, pp. 1~100.
- 대한통계협회, “경제지표 체계화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86.
- 박찬문,『경제지표와 경제분석』, 일신사, 1981.
- 성배영, “물가수준과 농산물가격안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8권, 제2호, 1985. 6, pp. 1~7.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물계통판매고 통계연보』, 1970~1995.
- ,『수협통계조사월보』, 1986~1995.

23) UR이란 Uruguay Round의 약칭이다. 1986년 9월 남미에 소재하는 Uruguay의 수도 Punta Del Este에서 GATT의 체약국 각료회담을 UR이라 한다. 여기서 다자간 무역협상의 목적과 일반원칙, 보호주의의 철폐, 협상 대상을 명기한 UR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24) 최정윤, “양식산업과 시장개방”,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1993, pp. 54~62.

## 水產物 生產者物價指數 算定方式에 관한 考察

- 수산청,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70~1994.
- 윤지현, "물가지수에 대한 통계학적 검토",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갑섭, "우리경제는 왜 인플레체질인가",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 1994. 11월호, pp. 16~17.
- 이철순, "물가변동추이 분석 및 전망", 대우경제연구소, 월간경제, 1994. 10, pp. 2~10.
- 지현석, "물가와 경기", 대우경제연구소, 월간경제, 1994. 10, pp. 25~29.
- 최정윤, "양식산업과 시장개방",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1993. 10.
- 통계청, 『물가연보』, 1980~1993.
- , 『한국통계조사현황』, 1989.
- 편인범, 『새경영통계학』, 학문사, 1994.
- 한국농어민신문, 1995년 12월 14일, 1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984년도 연구보고, 1984. 12.
- 한국수산회, 『수산년감』, 1970~1994.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0~1993.
- , 『물가총량』, 1970~1993.
- ,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1990.
- , 『조사통계월보』, 1990~1995.
- 허신행·이은우, "물가지수 작성과 농산물가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4권, 제1호, 1981. 3, pp. 64~69.
- Allen, R.G.D., "Index Numbers in Theory and Practice",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75.
- Allen, R.G.D., "Price Index Numbers", Review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31, 1975.
- Berenson, M.L. & D.M. Levine, "Basic Business Statistics", Third Edition, Prentice-Hall Co, 1986.
- Fisher, I., "The Making of Index Numbers", Boston, 1967.
- OECD, "Consumer Price Indices", Sources and Methods and Historical Statistics, 1980.
- U.S. Department of Labor, "Producer Price and Price Indexes", Data for 1978~1980.
- West Germany Statistische Bundesamt, "Statistik", 1977.
- 森宏, 『物價と流通構造』, 東洋經濟新報社, 1979.
- 日本富山統計課, 『經濟指標の解讀』, 1992.
- 通商産業大臣官房調査統計部, 『指數の作成利用』, 1985.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Lee, Kwang - Jin

### Abstract

As an important factor of capitalism economics, price of commodities represents a certain country's economic index. For having correct price policy, there should be an appropriate mechanism to make and use systematic statistical data on price. Price statistics are made by indexes and price indexes are categorized into producer price index(PPI) and consumer price index(CPI). The Bank of Korea is publishing producer price index every year, but the producer price index contains some problems. These include as follows : (a) the impractical selection of fisheries products sample (b) uncorrect measure of aquatic products weights (c) investigating sample places.

This study try to substitute producer price index of aquatic products and change construction of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with experimental research on representative fisheries, weight of each fisheries, and suitability of investigating sample places. It is possible to improve practical fisheries producer price index wit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findings are as follow.

- (a) It will be helpful for the government to make the fisheries price policy.
- (b) It can be used to understand trends of accurate price and price increase of aquatic products, and it's possible to compare with other industrial indexes including the mining,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industry and understand relative price movement.
- (c) When free sales systems of fisheries products as expected, it will be helpful to analyze price movement of producing fisheries cooperatives, producing fisheries market and consuming fisheries market, analysis of market, and formation and consideration of budget.
- (d) It can be an important index to determine labor wage.